

판례를 통해 본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연구*

이 시 환**

-
- I. 서 론
 - II.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제
 - III.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 IV.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판례
 - V. 요약 및 결론
-

주제어 :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전자무역

I. 서 론

2009년 9월 10일 중국넷(china.com.cn)과 항저우르바오(杭州日報) 등 중국 언론들은 ‘중국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의지하는 인터넷 무역시대가 다가온다’

* 이 연구는 2010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말로 뛰는 기존 무역 대신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며 “이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외무역 사업 기회를 개척하는 전자무역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¹⁾

전자무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바이어와 각종 상품 정보를 주고받으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역으로 인터넷 마케팅에서부터 무역실행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중국 제조업의 인터넷 무역시대를 이끌고 있는 기업은 다른 아닌 ‘세계 전자무역시장의 골리앗’ 알리바바닷컴(阿里巴巴; Alibaba.com)이며, 2009년 9월 현재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국 중소기업의 전체 전자무역 거래율은 7%로 미국(16%), 인도(11%)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크게 늘어날 전자무역 시대에 대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미 2008년 10월에 무역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각축”을 완성한 바 있다.²⁾ 3각축은 언제·어디서나 기업이 무역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역포털 이외에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와 ‘u트레이드허브(uTradeHub)’를 지칭한다. 트레이드코리아는 기업의 온라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도구이며, u트레이드허브는 국가전자무역서비스 인프라로서 각각 2008년 4월과 7월에 개통되었다.

또 이미 2008년 8월에는 당시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데이비드 웨이 중국 알리바바닷컴 CEO가 중국 항저우(杭州)시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다.³⁾ MOU 체결로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사이트 트레이드코리아닷컴에 등록하는 한국 기업은 알리바바닷컴 사이트에 자동 등록돼 수 천만의 외국 기업 및 판매상들과 전자무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1) 문화일보 2009년 9월 11일자.

2) 전자신문, 2008년 10월 10일자.

3) 한국일보 2008년 8월 4일자.

그리고 학계에서도 중국과의 전자무역 증대에 대비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상범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⁴⁾ 이용근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과 향후전망”,⁵⁾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전자무역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라 할 수 있다.⁶⁾ 따라서 전자무역의 바탕은 전자상거래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목표실현은 상품의 시장가치 실현에 달려있고, 그러한 시장가치 실현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전자상거래를 지탱하는 지주의 하나가 곧 법규인 것이다.⁷⁾

따라서 중국과의 전자상거래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국의 전자상거래관련 법규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박명섭·박우의 “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연구”,⁸⁾ 윤광운의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계법규와 동북아협력”,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한 법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아직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때에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과는 거리가 있다.

여기서 이 논문은 우선 현행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례를 검토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기의 거래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4) 중국연구, 제43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8.6.

5)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8.

6) 이상진·최동호, 전자무역, 두남, 2005, p.11, 표1-1 참조.

7) 姚克勤, 電子商務概論, 南京大學出版社, 2007, p.6.

8) 인터넷법률, 통권 제40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7.10.

9) 동북아연구, Vol.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제

1. 전자상거래와 전자계약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계약은 본질상 계약이고, 계약의 하나의 특수표현형식이며, 그 특수한 점이 기재당사자 의사표시내용의 방식 혹은 형식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¹⁰⁾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사이에 민사권리 의무를 설립, 변경, 종지하는 합의이다. 계약의 개념은 비교적 넓지만 중국 「계약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계약은 둘 이상의 법률지위가 평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된 합의이다.

②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발생, 변경 및 종지를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은 하나의 민사법률행위이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계약의 체결 및 형식 또한 변화하여 새로운 네트워크계약 혹은 전자계약이 생겨났다. 전자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전자자료교환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작성한 계약으로, 곧 인터넷 혹은 전자자료교환(EDI)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지하는 합의이다.

중국 계약법 제11조에 의하면 계약의 서면형식은 계약서·우편물 및 데이터전문 등 그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데이터전문은 전자자료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형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전자계약은 당연히 전통적인 계약과 다른 법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계약의 특징 이외의 전자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¹¹⁾

첫째, 전자계약의 청약 및 승낙은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된다.

10) 高富平 主編, 電子合同與電子簽名法研究報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p.61.

11) 韓立餘, 國際貿易法案例分析,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pp.146~147.

전통적인 계약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대면하여 청약과 승낙을 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우편, 전보, 전화, 전신 및 팩스 등의 방식으로 청약, 승낙을 한다. 그러나 전자계약은 이와 달리 청약, 승낙 모두 쌍방 당사자가 전자 데이터의 전달을 통해 완성된다. 일방의 전자데이터의 전송이 청약이고 타방의 전자데이터의 회송이 승낙이 된다.

둘째, 전통적인 계약의 전달은 일반적으로 쌍방 당사자의 대면 전달 혹은 우편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자계약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된다.

셋째, 전자계약의 성립, 변경 및 해제는 전통적인 서면형식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

전통적인 계약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서면형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전자계약은 전자자료교환의 방법을 채용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은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디스켓이나 기타 수령인이 선택한 종이 이외의 증개물(예컨대, 레이저디스크) 등에 저장할 수도 있으므로 전자계약은 전통적인 서면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자계약의 성립은 전통적인 의미의 서명날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계약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전자계약에서는 친필 서명, 날인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서명”하면 된다.

한편, 이러한 전자계약중에서 국제적 성질을 지닌 전자계약을 국제전자계약이라 한다.

2.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

(1)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전자서명 모델법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 입법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이다. UNCITRAL은 유엔의 전문연구기구로서 국제무역 중의 장애 제거,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이메일 및 전자자료교환(EDI)이 국제상거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UNCITRAL은 전자상거래방면의 입법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6년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라 한다)과 2001년에 “전자서명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이하 “전자서명 모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중 전자상거래 모델법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폭넓게 실행되었다. 그러나 국가마다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상이하게 시행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채용한 국가 상호간에도 전자상거래 입법이 있어서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편, 2000년에 유럽연합(EU)이 공표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EU 지침”(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¹²⁾은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범위 및 내용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각국의 전자상거래 입법 상호간에 통일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통일과 조화의 결핍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제거래에 장벽으로 인식되었다.¹³⁾

(2) 전자통신협약의 성립

위에서 언급한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전자서명 모델법은 이미 각국이 전자상거래의 틀을 형성 촉진하는 규범으로서 세계 각국의 전자상거래 입법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들 모델법은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 UNCITRAL이 바라는 전 세계 전자상거래 입법의 통일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여기서 2001년 UNCITRAL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4작업반(Working Group IV)을 설치 새로운 협약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11월 유엔총회에서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이 채택되었고,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해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2006년 1월 16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개방하였다. 이 협약은 보통 전자

12) Directive 2000/31/EC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Luxembourg, 8 June 2000.

13) CHONG Kah Wei & Joyce CHAO Sulin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A New Global Standard, Singapore Academy of Law Journal, 2006, p.118.

통신협약(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이라고 하는데, 이 협약은 세 번째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초일에 발효된다.¹⁴⁾ 2010년 7월 8일 현재 이 협약에는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¹⁵⁾

전자통신협약은 조약형태를 취함으로써 계약국 사이에 기본적인 전자 상거래 입법의 조화를 도모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법률문서로서, 이메일, 전자자료 교환(EDI) 및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 오래 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국제거래법규 하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자통신의 사용에 대한 장애의 제거를 의도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통신협약은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전자서명 모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협약상의 규정은 1996년 이후의 기술적인 발전, 특히 인터넷의 성장을 고려하여 보완하였다. 즉 전자통신협약은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전자서명 모델법을 기초로 한 국내 전자상거래 입법을 포함하여 동일 분야를 커버하는 계약국의 현존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입법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전자통신협약에 서명하였고¹⁶⁾ 따라서 장차 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II.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전자상거래의 감시관리 및 조절 통제는 민상법, 경제법, 행정법, 형법 등과 관련되고 그 중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 전문의 법률지위, 전자서명, 정보거래안전, 증거효력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되는 중요한 법규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4) 전자통신협약 제23조.

15) <http://www.unis.unvienna.org/unis/pressrels/2010/unisl143.html> (2010.7.21).

16) 서명은 찬성한다는 의사의 표시이지만 법적인 효과는 없다(John D. Gregory, Implementing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Business Law Today, Vol. 18,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http://www.abanet.org/buslaw/blt/2009-01-02/gregory.shtml>)).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이하 “중국 민법통칙“ 또는 단순히 ”민법통칙“이라 한다)은 평등 주체인 공민(자연인)간·법인간·공민과 법인간의 재산관계와 신체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모든 민사법률 규범 중의 기본법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 合同法; 이하 “중국 계약법” 또는 단순히 “계약법”이라 한다)은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확대, 경제사회의 부단한 발전 등 새로운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 등 이른바 3대 계약법으로 구성된 중국의 계약법률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1999년에 하나의 새로운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계약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의 수호 및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⁷⁾ 이 법에서는 전자계약의 형식,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및 장소, 그리고 관련 전자계약 효력확인 등의 문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법 제11조는 “전자정보문서”(전보, 전신, 팩스, 전자자료 교환 및 이메일 포함)를 서면형식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전자계약과 전통적인 서면계약형식이 동등한 법률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계약법 제16조¹⁸⁾, 26조¹⁹⁾는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및 장소에

17) 계약법 제1조 참조.

18)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데이터문서형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신자가 특정시스템을 지정하여 데이터전문접수를 하는 때에는 그 데이터전문이 그 특정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보고; 특정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데이터전문이 수신자의 어떠한 시스템이라도 최초로 접수된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본다.

19)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승낙은 그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승낙의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거래관습이나 청약의 요구에 따라 승낙의 행위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데이터문서형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승낙의 도달 시간은 이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대한 규정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이하 “중국 전자서명법” 또는 단순히 “전자서명법”이라 한다)은 2004년 8월 28일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1차 회의에서 통과·공포되었고 2005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²⁰⁾ 이 법은 총칙, 데이터 메시지, 전자서명과 인증, 법률적 책임 및 부칙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의거 민사활동 중의 계약 혹은 기타 문건, 증표 등 문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전자서명,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자서명은 수기서명 혹은 인장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다.

4. 기 타

위에서 언급한 법률 이외에 중국에서는 법원이나 전자상거래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등이 제정한 각종 법규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도메인 이름 분쟁과 관련하여 인터넷정보센터가 제정한 「도메인 분쟁해결방법」²¹⁾,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민사분쟁사건 적용법률에 관련되는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²²⁾,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안전보호에 관한 결정」²³⁾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는 아직 초보단계로서 법률상 인터넷거래의 권리 의무규정이 완비되고 있지 않다. 즉 소비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익보호 관리 규칙 및 시행조례가 없고, 전자상거래 경영자 및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할 전문적 전자상거래 방면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²⁴⁾

20) 한상현, “중국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와 전망”, 정보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6, p.1.

21)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域名爭議解決辦法》.

22) 最高人民法院 《關於審理涉及計算機網絡域名民事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23)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關於維護互聯網安全的決定》

24) 姚克勤, 전계서, p.283.

IV.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판례

여기서는 중국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실제로 전자상거래 관련법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전자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판례

네트워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형양목제품가공공장(衡陽木制品加工廠; 이하 “형양가공공장”이라 한다)이 경영실업유한공사(景榮實業有限公司; 이하 “경영공사”라 한다)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이 있다.

(1) 사건의 개요²⁵⁾

1999년 3월 5일 오전 경영공사는 형양가공공장에서 제조한 사무용 집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메일을 형양가공공장의 이메일 주소(h-ymz@online.sh.cn)로 보냈는데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 ① 사무용 책상 8개, 의자 16개
- ② 3월 16일 전에 경영공사(이메일 주소: jrsy@jrsy.com.cn)에 보내줄 것
- ③ 총 가격은 1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메일에는 사무용 책결상의 크기, 양식 등의 설명과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35분 18초 형양가공공장 또한 이메일로 경영공사에 회신하여 경영공사의 요구를 전부 승낙하였다. 또 경영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3월 6일 형양가공공장은 전문가를 경영공사에 보내 확인까지 했으나 쌍방 모두 서명을 한 문서는 없었다.

1999년 3월 11일 형양가공공장은 위의 책결상을 경영공사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경영공사는 이미 3월 10일 다른 공장이 생산한 책결상을 11,000위안에 구매하였기 때문에 쌍방 모두 서면으로 서명한 계약이 없음을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고, 쌍방의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월 16일 형양가공공장은 법원에

25) 趙秀文, 國際貿易法專題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p.75.

소를 제기하였다.

(2) 검토 및 판결

계약이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사이에 민사권리의무를 설립, 변경, 종지하는 합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민법통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²⁶⁾

“계약은 당사자간에 설립, 변경, 종지하는 민사관계의 합의이다.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또 중국 계약법도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8조 ① 법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을 임의로 변경·해제할 수 없다.

② 법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0조 제1항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는 서면형식·구두형식 및 기타형식이 있다.

제11조 서면형식이라 함은 계약서·우편물 및 데이터전문(전보·전신·팩스·전자자료교환과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 그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통칙 제85조 및 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당사자가 네트워크 혹은 전자자료교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체결한 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효력을 지닌다.²⁷⁾

26) 중국 민법통칙 제85조.

27) 이 사건 이후에 제정된 중국 전자서명법 제3조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민사활동 가운데서 계약, 기타문건, 증명 등 문서에 대해 당사자는 전자서명이나 데이터전자문서를 사용 혹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전자서명이나 데이터전자문서를 사용하기로 약정하면 단지 그 전자서명이나

이 사건에서는 소송 쌍방이 이메일의 내용 및 진실성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 그렇다면 쌍방의 메일을 증거로 쌍방이 집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명이 되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통일계약법 제11조는 이미 전자정보문서(전보, 전신, 팩스, 전자자료교환 및 이메일 포함)를 서면계약 형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은 의문의 여지없이 성립되었다. 경영공사가 정식으로 서명한 서면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 물품의 수리를 거절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형양가공공장은 계약에 약정된 시간에 물품을 경영공사에 송부하였으므로 형양가공공장은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고 어떠한 위약행위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4월 15일 형양가공공장의 승소판결을 내렸다.²⁸⁾

이 사례는 비록 국내 전자계약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 계약의 적용규칙과 국제전자계약의 기본은 동일하므로 전자정보문서형식으로 성립한 국제전자계약에도 유효한 문제이다.

(3) 이 사건의 시사점

전자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전자자료교환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작성한 계약으로, 곧 인터넷 혹은 전자자료교환(EDI)을 통해 당사자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지하는 합의이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전자계약도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2. 도메인 소유권의 확정과 관련된 판례

도메인의 소유권이 어떻게 확정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북경국망정보유한공사」(北京國網信息有限公司; 이하 “북경국망공사”라 한다)가 미국 미

데이터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인해 법률적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약 전자서명, 데이터전자문서의 사용을 약정한 경우 전자서명, 데이터전문의 형식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8) 張楚 등, 電子商務法案例分析,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2, p.218 참조.

주리주 세인트 루이스(Saint Louis)시에 있는 「이머슨전기공사」(이하 “이머슨사”라 한다)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이 있다.

(1) 사건의 개요²⁹⁾

원고 북경국망공사는 중국에서 비교적 빨리 인터넷업무에 종사한 회사로 1998년 7월 20일 원고는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명(domain name)을 등록하였고 그 유효기간은 2005년 7월 20일이었다. 2005년 6월 9일 피고 이머슨사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도메인 분쟁해결센터(이하 “도메인 분쟁해결센터”라 한다)에 소송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하기 전에 이미 피고가 "emerson"등록상표의 합법적인 소지인이며, 이 상표는 중국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emerson”에 대하여 아무런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것은 명확히 약의가 있는 것이므로 그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넘겨주도록 재결해 주길 청구한다.

도메인 분쟁해결센터는 2005년 6월 16일 피고의 소송장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2005년 9월 26일 도메인 분쟁해결센터는 2005년 재결서 0049호를 통해 도메인 이름 emerson.com.cn을 피고에게 양도하도록 재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북경국망공사는 법원에 제소하여 자기가 등록 및 사용하고 있는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은 부당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당해 도메인의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원고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원고가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으로 누리고 있는 권리 침범을 정지시키고 또한 이 사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다.

①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이 원고를 위해 등록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CN 도메인등록정보 조회결과 사본.

29) 韓立餘, 전계서, pp.134~135면.

② 도메인 분쟁해결센터가 피고의 emerson.com.cn라는 도메인 제소를 수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도메인 분쟁해결센터가 발급한 원고의 소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두 가지 증거에 대하여 그 진실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의 상태를 증명하는 증거이고, 피고행위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피고 emerson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즉 그는 중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도메인 분쟁해결센터에 소장을 제출했고 따라서 합법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으므로 법원이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도록 청구한다. 피고는 도메인 분쟁해결센터가 피고의 제소행위를 인가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도메인 분쟁해결센터가 2005년 9월 26일 작성 교부한 재결서(2005, 0049호)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재결서에 대해 그 진실성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이 재결서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검토 및 판결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은 인터넷상 웹사이트를 찾기 위하여 이용되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의 중요한 표지이고, 호스트 컴퓨터(host computer)의 번지에 상당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도메인 이름은 한번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도메인 이름은 희소자원이다. 또 도메인 이름은 “기업의 인터넷상 상표”로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인터넷 판매 및 인터넷 선전광고의 첫걸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도메인 이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정할 때 모두 자기의 회사명칭 혹은 상표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길 희망한다.

이 사건은 도메인 이름의 귀속 때문에 생긴 것인데, 재산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³⁰⁾ 그리고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 분쟁해결방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0) 중국 민법통칙 제72조 제1항.

“어떠한 기구 또는 개인이든 타인이 이미 등록한 도메인과 당해 기구 혹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두 분쟁 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도메인이름 민사분쟁사건 적용법률에 관련되는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의 하나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인민법원은 악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① 상업목적을 위해 타인의 유명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
- ② 상업적으로 원고의 등록상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사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상품·서비스 혹은 원고 웹사이트와 헷갈리게 하여 웹사이트 고객으로 하여금 그 웹사이트 혹은 기타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오도하는 경우,
- ③ 높은 가격으로 매도청약·임대 혹은 기타 방식으로 그 도메인 이름을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 ④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자기가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도 하지 않고 단지 다른 권리자의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저지할 의도로 등록한 경우,
- ⑤ 기타 악의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에 의하면 원고 북경국망공사는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고, 피고 이머슨사는 원고가 악의로 자기의 도메인 이름을 강탈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은 피고에게 악의가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 사건 피고 이머슨사는 “emerson”이라는 등록상표의 합법적인 소지인이고 당해 상표는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지명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행위는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소권을 남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행위 자체는 원고가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향수하는 권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명백히 “emerson”에 대하여 어떠한 합법적인 권익도 누리고 있지 못하므로 “emerson.com.cn”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은 분명히 악의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북경국망공사가 피고 이머슨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를 기각하고, 사건 수리비 1000위안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

(3)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도메인 이름을 먼저 등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대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메인의 소유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도메인 이름으로 향수하는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또한 도메인 등록에 악의가 없어야 한다.

3. 이메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

이메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느냐의 여부와 관련하여 정주중업유한공사(鄭州中業有限公司; 이하 “중업공사”라 한다)가 이모씨와 Shell China 유한공사(이하 “Shell사”라 한다)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이 있다

(1) 사건의 개요³¹⁾

Shell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회사로 Shell사가 생산한 윤활유는 1990년대에 들어 중국 하남성(河南省) 정주(鄭州)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 2001년 3월 19일까지 중업공사는 Shell 무역발전(상해)유한공사(이하 “Shell 무역공사”라 한다)의 「Shell 윤활유 수권 중개판매상」으로, 이 기간 전후에 하남지역에서 정주지구의 Shell 윤활유의 중개판매업무책임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01년 3월 19일 Shell 무역공사는 중업공사에 다음과 같은 팩스를 보냈다.

31) 韓立餘, 전계서, pp.140~142.

“2001년 3월 19일부터 귀 공사에 물품제공을 종료하고 아울러 귀 공사에 일체의 기술, 판매촉진, 광고 및 선전자료 제공을 중지하며, 이날부터 귀 공사가 진행하는 물품 선전 및 여하한 상업행위에 「Shell 유티유 수권 중개판매상」 이라고 표시한 어떠한 자료의 사용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그런데 당해 통지 중에는 중업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Shell 유티유의 사후처리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2001년 4월 27일 Shell공사 하부기구인 상해 사무소는 정주시 품질기술감독국에 편지를 보내 정주시 유티유 도매시장에서 대량의 Shell 유티유 제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했다면서 하남 정주지구의 유일한 수권 특약 중개상인 「안전공사 기배지사(汽配分公司)」와 협의하여 조사해 주도록 의뢰하였다. 2001년 4월 29일 정주시 품질기술감독국은 3명의 직원을 파견 중업공사의 유류제품창고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였다. 검사결과 당해 창고 내에서 Shell 유티유 제품을 가장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동년 5월 7일, 중업공사와 업무관계에 있는 무한(武漢)의 천위무역발전공사(天威貿易發展有限公司)가 중업공사와 계속적인 협력을 거절하였고, 6월에서 7월까지 그 밖의 일련의 고객들도 중업공사와의 거래를 연이어 거절하였다. 중업공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다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무한 천위무역발전공사 등 고객들이 Shell공사 하남지역 판매를 주관하는 이 모씨가 작성한 “정주 중업에 대한 유티유 도매시장에서의 창고검사 결과”라는 이메일을 받은 이후 중업공사와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당해 메일의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정주 중업에 대한 유티유 도매시장에서의 창고검사결과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관련 증거를 촬영하였으나 곧이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주 중업직원들이 카메라와 필름을 뺏어 달아나 파손하였다. 우리는 이미 일련의 유류제품 로트번호를 베껴 두었었으나 이 또한 곧바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주 중업직원들이 탈취해 달아났다. 다행히 업무원이 영리하게도 손바닥에 두 개의 로트번호를 적어두었다.... 정주 중업은 직원들을 모아 우리들과 검사원을 둘러싸고 소란을 피워 우리는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었다.....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은 정주 중업이 현지의 범죄집단과 연계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난 후 2001년 7월 20일 중업공사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Shell사와 이 모씨를 피고로 하여 하남성 정주시 중원구 인민법원에 양 피고의 권리침해 정지, 명예 회복, 그리고 정주의 「大河報」, 무한(武漢)의 「湖北日報」 상에 원고에게 공개 사과함과 동시에 그 경제적 손실 267,050위안을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또 원고 중업공사는 소송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모씨는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중업공사의 명예를 비방함과 동시에 Shell사에 공격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 또 이 모씨는 고의적으로 정주시 품질기술감독국에 “군사행정”이라고 허위보고를 하고 기회를 타 상업비밀을 도청하였다. 따라서 두 피고인의 행위는 그들의 상업비밀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예권을 침범하였다.

중업공사에 의하면 검사직원들이 중업공사 유류제품 창고에 들어가 검사할 때 이 모씨는 안전공사 기배지사 업무 책임자 왕모 및 직원 장모와 함께 들어갔다. 이 모씨는 검사현장에 대하여 사진을 찍었고 이에 중업공사 책임자가 현장에서 항의하자 검사직원이 사진기로부터 필름을 뺏어 폐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 모씨는 검사현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중업공사의 상업비밀을 빼낼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또 하남지역의 판매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를 이메일 형식으로 Shell사의 지역네트워크(LAN)상에서 상급주관부서에 종합 보고하여야 하고, 이 메일을 받은 자는 단지 몇몇 공사 직원뿐이며 이것은 순전히 업무종합보고이다. 그것은 인터넷 상에서 공개적으로 선포 및 전파하지 않았고, 또한 고의적으로 전파하여 중업공사의 명예권과 상업비밀 정보를 침해한 것도 아니다. 원고는 정주시 품질기술감독국에 “군사행정”이라고 엉터리 보고를 하였다고 하여 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Shell사 상해사무소가 안전공사 기배지사(정주지구 특약 판매중개상)에 의뢰하여 정주시 품질기술감독국과 합동으로 원고의 대량 의심제품을 조사하는 것이며, 엉터리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 메일에서 사용한 단 하나의 과격한 언사 “범죄 집단”은 이 모씨가 여러 차례 협박전화를 받은 상황 하에서 사용한 것이며, 부당한 면이 있지만 협박을 받은 결과이다. 따라서 그 행위는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 Shell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즉 Shell사의 내부 인터넷에서 당해 내용을 안 사람은 단지 5명뿐이고 그것도 Shell사 지역 네트워크상이

며 회사 내부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은 당해 이메일을 볼 수 없다. 또 이것은 이 모씨가 주관하여 자발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이고 결코 Shell사가 전파한 것이 아니며 또한 Shell사는 이 모씨의 이러한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Shell사는 실제로 어떠한 권리침해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피고가 될 수 없다.

(2) 검토 및 판결

명예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공민 혹은 법인에 대한 인품이나 덕성, 명성, 형상 등 각 방면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민법통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³²⁾

“공민, 법인은 명예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인격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모욕·비방 등의 방식으로 공민·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 민법통칙 중의 명예권 침해는 권리침해를 한 사람이 민사 주체에 권리침해행위(모욕, 비방, 고의로 타인의 사적인 비밀을 누설하는 등)를 하여 현실 사회에서 다른 민사주체에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네트워크가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 문자, 그림, 음성, 만화영화 등 컴퓨터 및 네트워크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각종 작품을 등재하여 공민 및 법인의 명예를 침해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훼손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터넷안전보호에 관한 결정」 제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권리침해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32) 중국 민법통칙 제101조.

인터넷시대에 이메일은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부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되는 민사주체의 명예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중 피고 이 모씨는 자기가 Shell사의 하남성 판매를 주관하기 위해 관련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을 날조하여 “곧이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주 중업직원들이 카메라와 필름을 뺏어 달아나 파손하였다”, “정주 중업은 직원들을 모아 우리들과 검사원을 둘러싸고 소란을 피워 우리는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자기가 Shell사의 하남성 판매를 주관하기 위해 Shell 유훈유유의 정주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정주 중업에 대한 유훈유도매시장에서의 참고검사 결과”라는 자료를 만들어 사실을 날조하고 또한 “검사결과”를 이메일 방식을 통해 Shell사 관계직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나중에는 중업공사와 업무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전파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목적이 결코 쌍방 사이의 선의로 해결할 상업분규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명백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중국 민법총칙 제10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이 사건을 관찰해 보면 이 사건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 Shell사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권 침해가 된다. 그리고 이 모씨는 Shell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Shell사는 이 모씨의 행위에 대해 마땅히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이 사건 피고 Shell사는 중업공사의 명예권 침해를 정지하라. Shell사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정주, 무한 두 곳의 (지정된) 신문에 사과성명을 게재하라, 또 Shell사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중업공사의 경제적 손실 267,050위안을 배상하라.”

(3)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메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메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사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매체로 하여 전통적 상거래방식을 포기하고 상업과 과학기술상호간의 결합을 거쳐 전 세계를 석권, 실질적으로 전통적 시장거래형식을 개변하였다. 이러한 거래형식의 개변은 필연적으로 거래안전에 충격을 주지만, 법률의 상대적 안정성 및 낙후성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는 전자상거래의 이러한 새로운 거래방식에 충분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전자상거래에 부합하는 법률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이든, 신흥공업국이든 또는 발전도상국이든 불문하고 세계 각국은 모두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돌이켜 보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수십개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가 전자상거래 방면의 법률규범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국내 및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가 완비된 나라는 없고 또 완비되기도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현행 법규를 살펴보고 또 중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몇 가지 법률문제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기의 거래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내용은 판례의 검토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규범과 관련하여 UNCITRAL이 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전자서명 모델법」은 이미 각국의 전자상거래 틀의 형성을 촉진하는 규범이 되었다. 그리고 전자통신협약은 전자상거래에서 새로운 국제규칙을 확립한 이정표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고, 중국은 이미 이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셋째, 중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발맞추어 1999년에는 계약법상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삽입하였고, 또 2004년에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는 법원이나 전자상거래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등이 제정한 각종 법규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제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판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전자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효력이 생긴다.

② 도메인 이름은 먼저 등록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메인이름으로 향수하는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 도메인 등록에 악의가 없어야 한다.

③ 이메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사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법률문제가 무수하게 많으나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등으로 그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판례만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은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계속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는 아직 초보단계로서 법률상 인터넷거래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정이 완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익보호관리, 그리고 전자상거래 경영자 및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명섭·박우, “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통권 제40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7.
- 손상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제43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8.6
- 윤광운,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계법규와 동북아협력”, 동북아연구(Vol.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 이상진·최동호, 전자무역, 두남, 2005.
- 이용근,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과 향후전망”, 전자무역연구(제6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8
- 이재규 외, 전자상거래원론, 법영사, 2000.
- 한상현, 중국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와 전망, 정보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6.
- 문화일보 2009년 9월 11일자.
- 전자신문, 2008년 10월 10일자.
- 한국일보 2008년 8월 4일자.
- 高富平 主編, 電子合同與電子簽名法研究報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姚克勤, 電子商務概論, 南京大學出版社, 2007
- 張楚 등, 電子商務法案例分析,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2.
- 趙秀文, 國際貿易法專題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 何其生, 統一合同法的新發展, 北京大學出版社, 2007.
- 韓立餘, 國際貿易法案例分析,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 最高人民法院 《關於審理涉及計算機網絡域名民事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關於維護互聯網安全的決定》
- CHONG Kah Wei & Joyce CHAO Sulin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A New Gloval Standard, Singapore Academy of Law Journal, 2006.
- Directive 2000/31/EC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Luxembourg, June 2000.

Gregory, J.D. Implementing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Business Law Today, Vol. 18,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
(<http://www.abanet.org/buslaw/blt/2009-01-02/gregory.shtml>).
<http://www.unis.unvienna.org/unis/pressrels/2010/unisl143.html>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E-Commerce in China

Lee, Shie Hw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legal aspects of e-commerce, particularly those relate to electronic contract, in China

On 23 November 2005,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a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known popularly as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China signed it but the convention is not binding yet as it still requires the ratification by three states.

On the other hand, China adopted a new act legalizing the electronic signature in 2004. This new act provides electronic signatures with the same legal status as handwritten signatures. But the efficiencies that business hopes to achieve through electronic commerce are not completely reflected in the legal processes necessary to support those hopes.

Key Words : E-Commerce, Electronic Signature, E-Trade